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40 발의연월일: 2021. 12. 31.

발 의 자:조해진·김성원·김영배

이은주・金炳旭・강대식

강민국 • 박성민 • 정점식

홍정민 · 이정문 · 장경태

김민철 · 정춘숙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시·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구·시·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 정보를 제공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구·시·군의장에게 제공해 왔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18. 「공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구·시·군의 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률

상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불가 의 결을 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등의 개인 정보처리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전국 시·구·읍·면(약 1,600여개) 에서 개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는 바,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업무혼선 및 오류발생 가능성이 우려됨.

이에 구·시·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명부작성) ① ~ ⑥ (생	제37조(명부작성)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
	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은 관공서, 그 밖의 공공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은 이에 따라야 한다.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